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개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96. 12. 31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안전·보건관계 전문가는 물론 산업현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해 8월 수립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바와 같이 안전·보건관련 선진제도들을 도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구미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안전·보건문제를 노·사가 공동 결정하는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재해예방의 핵심인 기계·기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의무주체, 근로자는 보호대상, 정부는 감독기관이라는 구조가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틀을 탈피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을 노·사가 함께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선진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가운데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업장 안전·보건문제 노·사 공동 결정 등 근로자 참여 확대

#### 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 강화(법 제19조 개정)

## □ 개정내용

현 행(행정지침)	개 정(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사항에 대해 심의기능만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조1항 각호에 관한 사항</li> <li>※ 제13조1항 각호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한 것임</li> </ul> </li>   <li>◦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도 설치 불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규정에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결기능 추가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조1항1호 ~ 5호, 7호의 사항(사업장 자체 산재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및 산재통계에 관한 사항)</li> <li>- 법 13조1항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li> </ul> </li>   <li>◦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별도 설치 의무화</li> </ul>

## □ 개정이유

노·사 자율에 의한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사항을 노·사가 함께 의논하도록 현재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권만 있을 뿐 의결권이 없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노·사간에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동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1,000인 이상 대기업에는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 외국의 예

독일의 경우 모든 안전보건사항에 대해 노·사가 공동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ILO에서도 『노사 공동 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 경우 근로자는 최소한 사용자 대표와 동등한 대표권을 갖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권고 164호, 1981)

##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법 제61조의2 신설)

## □ 개정내용

현 행(행정지침)	개 정(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감독관 제도를 행정지침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촉대상 : 500인 이상 사업장(기계·기구 제조 등 9개 위험업종은 100인 이상), 공사금액 30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근로자</li> <li>- 추천방법 : 노동조합이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추천</li> </ul> </li>   <li>※ 위촉은 노동부 장관이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감독관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예정)</li> </ul> </li>   <li>◦ 대상 : 100인 이상 사업장(제조·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은 500인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현장의 노조간부 또는 근로자, 노·사 단체 및 산재예방전문단체의 임직원</li>   <li>◦ 방법 : 노동조합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li> </ul>

## 자료 3

현 행(행정지침)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li> <li>· 잠재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건의</li> <li>· 사업장 감독, 안전보건 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등에 입회</li> <li>· 위험상황 신고 및 정보 교류</li> <li>· 법령 개정 등 정책 모니터 활동</li> <li>· 무재해운동 등 예방활동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현행에 추가·강화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참여</li> <li>·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li> <li>· 사업장 감독에 참여</li> <li>·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협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li> <li>·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li> </ul> </li> </ul>

### □ 개정이유

정부는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특히 노동조합)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제도를 '95. 7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협조가 미온적이고 명예감독관의 위촉범위와 권한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위촉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명예감독관의 직무 수행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명예감독관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촉대상, 절차 및 업무범위 등 세부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 외국의 예

독일,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는 사업장에 근로자 안전위원회를 두어 이들로 하여금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을 모니터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독관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ILO에서도 「근로자 안전위원회에게 작업장 점검을 할 수 있고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권고 164호, 1981)

### 다. 근로자의 알 권리 확대(법 제11조, 제36조, 제43조, 제49조)

####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대표의 정보 요청 범위(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등</li> </ul> </li> <li>◦ 근로자 대표가 입회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의 범위(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환경의 측정·평가를 할 때</li> </ul> </li> <li>◦ 근로자에게 설명회 개최(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사항을 추가(제11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환경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li> </ul> </li> <li>◦ 다음 사항을 추가(제36조, 제43조, 제49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기구 자체 검사, 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을 할 때</li> </ul> </li> <li>◦ 다음 사항을 추가(제43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진단 결과</li> </ul> </li> </ul>

#### □ 개정이유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 사업주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물론 건강진단 결과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 외국의 예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페란드 등 거의 모든 선진외국에서는 근로자 대표에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하거나 입수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다만 일본은 관계규정이 없으며, 미국은 사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청구권만 보장), ILO에서도 각종 협약 및 권고 등을 통해 근로자 대표에게 자료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약 170호<1990>, 권고 164호<1981>, 권고 171호<1985>)

## 2. 근로자 보호 강화

### 가. 근로자 건강보호 확대(법 제4조 개정)

####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건강보호 관련 정부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건강장해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건강보호 관련 책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li> </ul> </li> </ul>

#### □ 개정이유

국민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산업보건정책이 직업병 등 건강장해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부차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조치와 시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침을 공표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교육·상담, 체육활동 편의제공 등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같이 「근로자 종합건강증진 실천운동(THP)」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무규정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보완하였다.

#### ※ 외국의 예

일본은 '88년부터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한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을 추진하고 사업장 및 서비스기관에 대해 건강증진운동 추진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Health Care Trainer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미국은 「Healthy People 2000」이라는 국민건강 증진계획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기업이 자율시행도록 권고하고 있다.

### 나. 급박한 위험 발생시 대피 근로자 보호법(법 제26조 개정)

####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박한 산업재해의 위험발생시 해당근로자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규정 외에 추가보호 신설(제26조제3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피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li> </ul> </li> </ul>

#### □ 개정이유

현재는 급박한 위험상황에 처한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 및 대피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우려하여 급박한 위험 발생시에도 작업중지 및 대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으로부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대피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 외국의 예

ILO에서는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긴급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작업환경으로부터 피신한 근로자는 그 결과 국내 여건과 관행에 따라 부당한 처리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협약 155호<1981>)

### 3.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제 시행(법 제34조의 2~제34조의 6 신설)

#### □ 신설내용

신 설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기구 안전인증제 도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법정검사대상 제외)</li> <li>- 절차 : 기계·기구 제조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노동부 장관이 심사하여 합격한 제품에 대해 안전증표 사용을 인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은 산업안전공단에 위탁</li> </ul> </li> <li>- 기준 : ISO 등 외국의 인증기준을 준용하여 노동부령으로 규정</li> <li>- 혜택 :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안전증표 표시, 인증받은 사실을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증표 사용, 인증 취소시 증표제거 조치</li> </ul> </li> </ul> </li> </ul>	

#### □ 신설이유

기계·기구로 인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현재 법정 검사대상 이외의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유럽 등 선진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법정 검사에 합격한 제품도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높아 수출을 어렵게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진외국과 같이 의무검사는 위험도와 재해발생빈도가 높은 일부 위험 기계·기구에 한정하고 나머지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계·기구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 외국의 예

유럽연합(EU)에서는 기계·기구일반에 대한 CE 마크, 방폭구조에 대한 EX 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UL 마크를 시행하고 있다.

### 4. 산재예방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가. 안전·보건관련 산업 지원(법 제35조의2 신설)

##### □ 신설내용

신 설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련 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안전장치·보호구·작업환경개선시설 업체</li> <li>– 방법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로부터 등록을 받아 등록한 업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은 산업안전공단에 위탁</li> </ul> </li> <li>– 혜택 : 등록업체 및 제품에 대한 홍보 지원 및 기술요원 파견을 통한 기술지도, 시설·장비 구입시 우선 융자 등</li> </ul> </li> </ul>

##### □ 신설이유

안전장치나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배기·환기시설과 같은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외국제품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안전장치와 보호구 등은 그 특성상 설치대상 기계·기구의 규격·용량이나 착용할 근로자의 체형 등에 맞아야 하므로 외국제품보다는 국산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산재예방 및 근로자 보호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에 국내 관련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케 하고 등록된 업체에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티분야의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국내외 전문기술자 선정·알선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나. 민간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법 제 26조 개정)

##### □ 개정내용

현 행 방 법	개 정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사업주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산재예방활동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사업주, 노·사단체, 산재예방관련전문단</li> </ul> </li> </ul>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경비 보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산재예방 장비 · 시설 구입, 교육 · 연구,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기타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경비 보조 또는 기타 지원</li> </ul>

#### □ 개정이유

현재는 지원대상을 사업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관련 전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나 대학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산재예방에 대한 노·사단체나 산재예방관련 전문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재예방 관련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원대상 및 지원할 사업의 내용 등을 확대하고 경비의 보조뿐 아니라 장비대여, 장소제공 등도 가능하도록 지원방법도 확대하였다.

### 5.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강화

#### 가. 도급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법 제29조 개정)

####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사업주의 조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시행규칙 제 30조</li> <li>· 내용 : 도급사업주에게 자신이 관할하는 사업장내의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의무 부여</li> <li>· 벌칙 : 500만원 이하 벌금</li> </ul> </li> <li>- 신 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법 제29조에 명문화</li> <li>· 내용 : 현행과 동일</li> <li>·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li> </ul> </li> <li>- 도급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노·사와 함께 작업장을 합동점검해야 함</li> </ul> </li> </ul>

#### □ 개정이유

건설공사와 같이 도급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작업장내에서 하도급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재는 시행규칙(제30조)에 하도급근로자가 붕괴, 도괴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주가 산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도급인, 하도급인 및 각각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사가 함께 재해예방에 노력하도록 합동점검을 의무화하였다.

## 나. 대형재해유발 사업주에 대한 제재요청근거 명확화(법 제51조의2 신설)

### □ 신설내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재해유발 건설현장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 제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시행규칙 제136조</li> <li>– 적용범위 : 건설업</li> <li>– 요건 : 동시에 3인 이상 사망한 재해(전치 3개월 이상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계산)</li> <li>– 제재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도급한도액 감액조치 등을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요청</li> <li>– 신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재해유발 사업장 제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법 제51조의2로 상향조정</li> <li>– 적용범위 : 전산업으로 확대</li> <li>– 요건 :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다수 근로자 사망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재해, 감독기관의 조치명령 또는 작업중지명령에 위반하여 사망재해 발생</li> <li>– 제재내용 :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산안법에서는 삭제</li> </ul> </li> <li>– 효력 : 요청받은 기관은 상응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li> </ul> </li> </ul>

### □ 신설이유

현재는 제재요청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데다 적용범위도 건설업에 국한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한계가 있으므로 법에 제재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도 전산업으로 확대하였다.

## 다. 법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법 제67조~제70조, 제72조 개정)

###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위반자 처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칙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li> <li>· 최저 : 300만원이하 벌금</li> </ul> </li> <li>– 과태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 300만원이하</li> <li>· 최저 : 100만원이하</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칙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li> <li>· 최저 : 500만원이하 벌금</li> </ul> </li> <li>– 과태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 1천만원이하</li> <li>· 최저 : 300만원이하</li> </ul> </li> </ul> </li> </ul>

### □ 개정 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수준은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안전관련 타법령의 유사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과 비교하여도 그 정도가 미약하므로 범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 현행 안전관련 법령의 최고처벌기준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도시가스사업법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소방법, 건설업법, 시설물안전관리법 : 10년이하의 징역
- 전기사업법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6.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가. 안전·보건관리자 권한 강화 (법 제16조의2 신설)

#### □ 신설 내용

신	설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자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자가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에게 견의·지도·조언한 경우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은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li> </ul> </li> </ul>			

#### □ 신설 이유

사업주나 현장내 부서장들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조언을 행하게 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자가 지도·조언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문기술성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 견의·지도·조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나. 표준안전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법 제30조 개정)

####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안전관리비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범위 : 건설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안전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에 선박건조·수리업 등을 추가</li> </ul> </li> </ul>	

#### □ 개정 이유

재해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재원 확보방법인 표준안전관리비제도가 현재 건설업에 도입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우선, 도급이 많이 행해지고 재해율이 높은 선박건조·수리업 등 건설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 다. 보호구검정 면제대상 확대 (법 제35조 개정)

##### □ 개정 내용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 검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대상 :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안전검사 합격 품, 보호구부품 중 KS표시 부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 검정면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에 추가하여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정 면제</li> </ul> </li> </ul>

##### □ 개정 이유

현재 우리의 검정기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하는 선진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상호인정 협정을 통해 중복검정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외국의 검정기관(예)

- 미국 :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 (NIOSH)
- 독일 : 산업안전연구원(BIA)
- 영국 : 안전보건청 조사연구지도국(RLSD)
- 일본 : 산업안전기술협회, 산업의학종합연구소

#### 라. 유해성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제도 보완 (법 제40조 개정)

##### □ 개정 내용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의무자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제출의무자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동일하나『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li> </ul> </li> </ul>

##### □ 개정 이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먼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유해성심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이를 사용할 사업주가 아닌 수입대행업자(오피상)인 관계로 유해성조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 제출 의무자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을 하는 경우 유해성심사를 이들이 받도록 되어 있어 유해성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자료도 이들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수입대행업자가 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